

【삼보후레쉬 4차 회동】

4차 회동: 7월 17일(수) 15:00 평택시 근로복지관 회의실

(합의안내)

(사측 입장)

요구안	H사 주장	삼보 안	결정내용
① 운송료 10% 인상안	<p>작년에 3%인상을 보장 받았다. 올해는 올려 받기로 한 3%로 빼면 사실상 1%밖에 안된다.</p> <p>이제 다 결정됐으니 어쩔수없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.</p> <p>어떤 명목을 불여서라도 차주들을 달랠방안을 만들어 주길 바란다.</p> <p>예를 들면 크리에이트 회수비 인상,식대,상차비인상등의 명목으로 인상에 반영에 주길 원한다.</p>	<p>일단 화주측에 차주들의 의견을 충분히 전달하겠다.</p>	
② 위수탁 계약서 서류 폐지안	보증인,보증보험,각서 폐지 요구	전체차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차주들의 요구를 받아드림	보증인,보증보험,각서 폐지하였고 인감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등도 최소한의 서류로 대체함

● 제4차 위수탁 계약상(냉장탑차)의 독소조항의 폐지요구 협의안

요구안	H사 주장	삼보 안	결정내용
<p>③</p> <p>제7조 차량운행방침 다. “을”은 정당한 사유 없이 화주의 배차 지시를 거부하거나, 화주가 판단시 제품 수·배송 업무에 부적합하다고 하다고 판단될 때는 “화주”의 요청에 의해 “갑”은 “을”에게 차량 운전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, 이때 “을”은 이를 즉시 수용해야 한다.</p>	<p>배송에 지장이 없는 한 자유로운 조합활동을 보장해주길 바란다.</p>	<p>정당한 사유가 추상 적이라 했으나 달리 합리적인 문안이 없고 일반적으로 계약 서상에 쓰는것이므로 양해바란다.</p>	<p>원안대로 둠</p>
<p>④</p> <p>마.“을”의 차량은 화주의 필요에 의해 화주의 타 공장(광주, 경산, 영동, 청양) 파견 및 지원 운행을 요구시 응해야 하며, 이때 차종별 운임은 화주의 산출 규정에 의해 지급한다</p>	<p>파견이라는 단어는 너무 일방적이다 파견이라는 단어를 삭제해주기 바란다.</p>	<p>적극 검토하겠습니다</p>	<p>마.“을”의 차량은 화주의 필요에 의해 화주의 타 공장(광주, 경산, 영동, 청양) <u>파견</u> 및 지원 운행을 요구시 응해야 하며, 이때 차종별 운임은 화주의 산출 규정에 의해 지급하되 결정하기 전에 <u>지입차주와 계약을 수립하고 만약 차도록 노력한다.</u> (단, <u>파견은 모든 차주에게 공평하게 한 시적으로 한다</u>)</p>

요구안	H사 주장	삼보 안	결정내용
<p>⑤</p> <p>제10조 (수·배송 운임) 가. 냉장제품 운송 차량의 노선별 수·배송 운임은 “화주”의 노선 별 단가표에 의해 지 급한다.</p> <p>나. 화주의 사정으로 인한 노선의 신설 또 는 노선의 변경으로 인한 운임 조정이 필 요할 경우는 화주의 노선 운임 산출식에 의거 결정한다</p>	<p>차주 또는 차주대표 와 협의후 반영하도 록 노력한다로 바꿔 주길 요구함</p>	<p>적극 검토함</p>	<p>다. 화주가 노선단가 표, 노선운임산출식을 결정하기전에 “갑”은 <u>차주들의</u> 의견을 반 영하도록 노력한다.</p>
<p>⑥</p> <p>제16조 (손해배상) 다. “을”이 정당한 사유없이 운행 거부 또는 불법파업 행위로 인해 화주 및 “갑”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“을”은 화주 및 “갑”的 손해에 대하여 전액 변상 및 민형사 상의 책임을 진다.</p>	<p>자유로운 조합활동 을 묶는 독소조항이 다 차주들이 책임없는 행동은 안한다. 삭제를 요청함</p>		<p>모든 종류의 계약서 상 계약관계에서 다툼이 발생하면, 원만 한 계약관계가 유지 되지 못하게 한 당사 자의 책임을 묻는 손 해배상 조항은 존재 하는 것 이므로 그대 로 존치해야함</p>

요구안	H사 주장	삼보 안	결정내용
⑦제17조 (보증금) 가. “을”은 “갑”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관리의 수탁을 위하여 보증금으로 차량 구입 및 제반 수속비용을 합한 금액을 “갑”에게 납입 또는 분납하고 차량을 인수한다.		제17조 조항은 귀측의 의견을 받아드려 삭제하기로 함.	삭제
⑧ 제23조 (운임약정) “을”은 “갑”과 화주간에 운임약정(운임책정)을 할 경우 이에 대해 “갑”에게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.	운송비용 부담을 “을”이 하고 있기 때문에 운임의 결정권은 “을”에게 있을 것임. 따라서 불합리한 운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 할수 있어야 함	귀측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조항을 수정함	“을”은 “갑”과 화주간에 운임약정(운임책정)을 할 경우 이에 대해 “갑”에게 의견을 개진할수 있다.
⑨제24조 (운임약정) 다. “을”的 관리차량이 위생관리 부실로 인해 “갑” 또는 화주로부터 지적을 받아 발생되는 모든사항은 전적으로 “을”에게 책임이 있으며 향후 “갑”的 평가에 적용한다 (“갑”은 “을”的 차량에 대하여 배차정지(운행정지), 화주로부터 감차처분 시 해약을 할 수 있으며, 이에 대해 “을”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.)		▷ 귀측의 의견을 반영하여 조항을 수정함	“갑”은 “을”에게 1차 경고, 2차 배차중지, 3차 감차 처분하며 심히 부당한 조치라고 판단될 시 이에 대해 “을”은 이의를 제기 할수도 있다

⑩ 제38조 사고보상 바. “을”은 본 계약의 해약 또는 해약 후라 할지라도 본 계약 각 항에서 “을”이 부담하여야 할 제세공과금 등 제반 미결사항에 대해서는 “을”과 연대보증인이 책임을 지고 변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	연대보증인 삭제 검토	바. “을”은 본 계약의 해약 또는 해약 후라 할지라도 본 계약 각 항에서 “을”이 부담하여야 할 제세공과금 등 제반 미결사항에 대해서는 “을”이 책임을 지고 변제 한다.	
⑪ 제31조 (해약) 11) “갑”이 인정하지 않는 단체에 가입했을 때 (“을”이 기타 단체 및 협회에 가입할 경우는 반드시 “갑”的 승인을 득해야 한다) 12) “갑”的 동의없이 불법 집회 및 파업, 농성에 주도적인 역할을 행사하거나 가담했을 때	해약조항을 삭제하든지 아니면 화물연대를 예외조항으로 넣어주길 강력 주장함	귀족에서 주장하는 부분중에(“을”이 기타 단체 및 협회에 가입할 경우는 반드시 “갑”的 승인을 득해야 한다) 는 삭제 할수 있다	
⑫ 오포센터 요구안: 월대로 운영을 계속 할것인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다가 탕개념으로 바꿀것인지 향후계획을 설명바람	[2.5톤 기준] ▷ 월대: 350만원+@ ▷ 월운행횟수: 52회 ▷ 월휴무: 4회	[2.5톤 기준] ▷ 월대: 310만원+@ ▷ 월운행횟수: 57회 ▷ 월휴무: 3회	화주와 협의 중